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

의안 번호	10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년 9월 17일

제출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

1. 提案經緯

가. 92년 9월 4일 제12회 영등포구의회(임시회) 폐회중 개최한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김형수위원의 1명이 成案하여 書面動議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키로 원안 가결

2. 提案理由

가.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함.

3. 主要骨子

가. 제17조중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
7. 보조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7 조중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 하고,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보조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

